



맞춤형 연금설계로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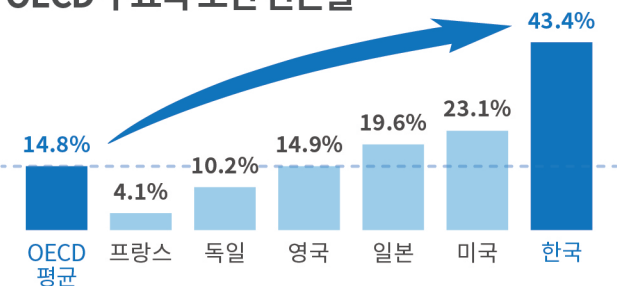
우체국연금보험 2312



- ☑ 유배당상품으로 운용이익금 발생 시 배당금 지급
- ☑ 조기집중연금형 도입 및 가입나이, 보증지급기간 등 고객의 선택폭 확대
- ☑ 중도인출제도로 긴급자금 활용은 물론 자유롭게 추가납입 가능

연금보험, 왜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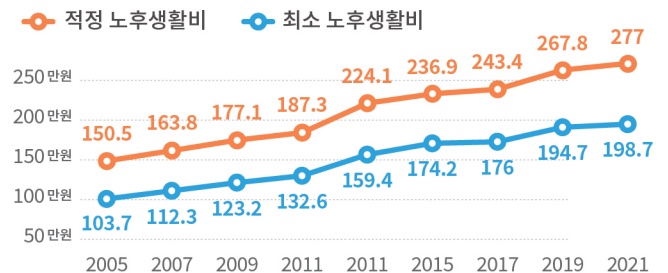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2021]

현실적인 노후대비 필요!

노후생활비 연도별 추이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1]

이 자료는 당 상품의 개괄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보조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연금설계

운용이익금 발생 시 배당혜택 제공!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로 목적에 따른 노후설계 가능~

제1보험기간 : 재해장해보험금

일시납

일시납 기본 보험료의 20%
✕ 해당 장애지급률

월납

월납 기본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애지급률

* 재해장해보험금의 경우는 재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사유 발생

제2보험기간 :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중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이후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조기집중기간 : 5년, 10년, 연금액 비율 : 200%, 300%)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확정지급)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상기 내용은 주요 지급되는 보장 내용만을 간략하게 예시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내사항

주계약



연금개시나이

45~80세

종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확정지급)



가입나이

0~
(연금개시나이-5)세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납입기간

일시납

일시납

월 납

3, 5, 7, 10,
15, 20년납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주기: 수시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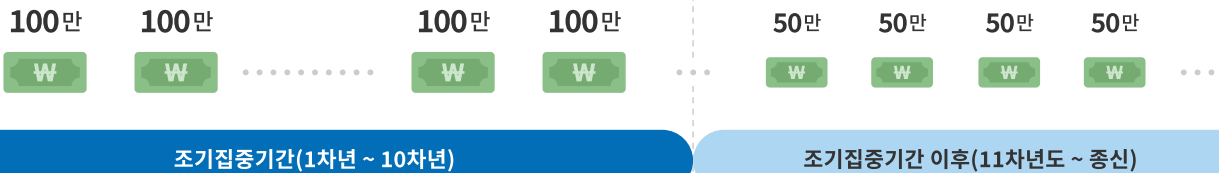
보장내용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제1 보험기간	재해장해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기본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월납	월납 기본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제2 보험기간	생존 연금	중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조기집중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집중기간 동안에는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 조기집중기간 : 5년, 10년 연금액 비율 : 200%, 300%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적립금액”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적립금액과 추가 적립금액을 합한 금액(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의 100.1%로 합니다. 3. “기본 적립금액”이란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염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추가 적립금액”이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염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신공시이율Ⅳ(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하여 추가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5. 중신연금형의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지급기간(90세 또는 100세)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9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6. 중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90세,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9.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시점 적립금액에서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11.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2.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중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인 경우, 제2보험기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에도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후년도 생존연금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중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 연금도해

< 중신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의 지급 예시 > - 조기집중기간 10년, 연금액비율 200% 신청시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년간 연금액(100만)은 조기집중기간 종료 후 연금액(50만) 대비 200%를 지급



* 조기집중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년 또는 10년

* 연금액비율 : 조기집중기간 종료 후 연금액의 200% 또는 300%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다를 경우에는 조기집중기간 이내 또는 조기집중기간 이후의 기간 내에서도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 중신연금형(정액형,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16.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17.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보험료 한도액

월납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 중 작은 금액에서 해당년도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과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12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가입할 때(가입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 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당년도 가입경과월수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을 1개월로 하고 이후 계약해당일이 경과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최대12개월)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시납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기본보험료 × 200%”와 “계약체결시점 가입나이의 기본보험료 최고 납입한도액에서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만큼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제1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금액(다만, 한금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월납계약의 경우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 일시납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인출시 적립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보험연도 기준 매년 최초 4회까지의 중도인출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적립금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배당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체신관서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자배당은 체신관서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의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단, **운용결과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액계약 적립에 관한 사항 (월납계약에 한함)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액에 가산합니다.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고액계약 적립조건	고액계약 적립금액
3년납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1.0%
5년납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1.5%
7년납 이상	기본보험료 > 30만원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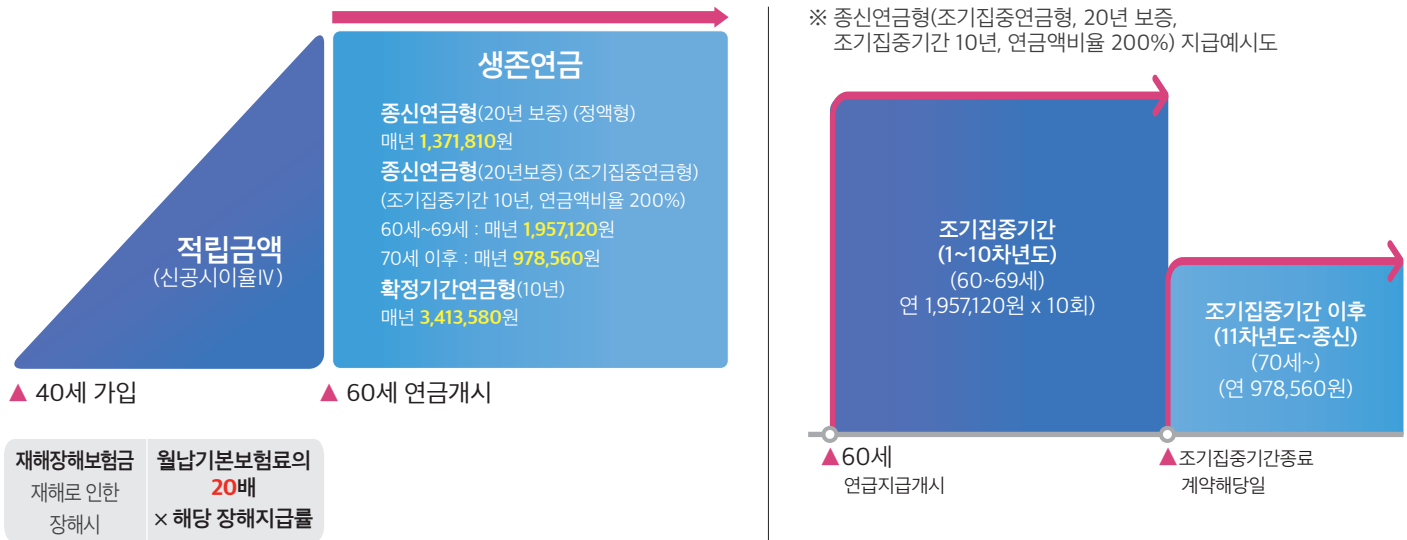
주) 1. 기본보험료는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일의 금액으로 하며,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계산합니다. 2.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은 ‘0’으로 합니다. 3. 고액계약 적립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고액계약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약

특약명칭	특약내용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2109	<p>[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p> <p>[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p> <p>[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p> <p>[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지급예시도

가입예시 : 월납기본보험료 10만원·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주)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함)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위 지급예시도의 생존연금은 신공시이율Ⅳ가 2.80%로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Ⅳ 및 보험료 납입일 등이 변경되면 상급금액도 달라집니다.(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 최저보증)

기본 보험료 납입한도액

단위 : 만원

가입나이	일시납	월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 미만	500~4,000	10~110	10~60	10~40	5~30	5~20	5~10
20~29세	500~6,000	10~160	10~90	10~60	5~40	5~30	5~20
30~39세	500~8,000	10~190	10~110	10~80	5~50	5~40	5~30
40~49세	500~9,000	10~230	10~130	10~90	5~70	5~40	5~30
50세 이상	500~10,000	10~270	10~150	10~110	5~80	5~50	5~40

주) 일시납은 100만원 단위, 월납은 1천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일시납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준, 단위 : 원

경과기간	기본보험료	10,000,000	20,000,000	30,000,000
1년		10,044,580	20,089,170	30,133,760
3년		10,450,250	20,900,510	31,350,770
5년		10,878,960	21,757,920	32,636,890
7년		11,332,010	22,664,030	33,996,040
10년		12,060,280	24,120,560	36,180,840
15년		13,416,500	26,833,000	40,249,510
20년		14,973,530	29,947,070	44,920,600

주) 1. 위 표의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IV 2.80%가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되면 상기금액도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IV에 대하여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월납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기준, 단위 : 원

경과기간	매월 10만원 납입시		매월 20만원 납입시		매월 30만원 납입시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200,000	965,530	2,400,000	1,943,240	3,600,000	2,920,960
3년	3,600,000	3,412,700	7,200,000	6,862,990	10,800,000	10,313,270
5년	6,000,000	5,994,070	12,000,000	12,052,550	18,000,000	18,111,040
7년	8,400,000	8,633,240	16,800,000	17,359,270	25,200,000	26,085,290
10년	12,000,000	12,875,630	24,000,000	25,889,650	36,000,000	38,903,660
15년	18,000,000	21,030,560	36,000,000	42,284,410	54,000,000	63,538,260
20년	24,000,000	30,392,930	48,000,000	61,106,630	72,000,000	91,820,320

주) 1. 위 표의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IV가 2.80%로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신공시이율IV 및 보험료 납입일 등이 변경되면 상기금액도 달라집니다. 2.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IV에 대하여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합니다.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우체국연금보험 2312 상세안내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www.epostlife.go.kr
모바일앱
m.epostlife.go.kr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 - 0100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 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계약해지
 - 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환급금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6. 위법계약 해지권
 -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 32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1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세제혜택
 -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차익 비교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이 자료는 당 상품의 개괄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보조자료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우체국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제작 : 우정사업본부, 제작일자 : 2023. 10. 26.
승인번호 : 00-231026-764-P200068
상품코드 : P200068